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0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정헌・김 현・조계원
이개호・박홍배・이용우
김우영・이해민・윤준병
한민수・박선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

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서비스(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하여 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익잉여금을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공공서비스(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하여 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바. ~ 차. (생 략)	사. ~ 카. (현행 바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익잉여금을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